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상위법 폐지로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6조)
- 나.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)
- 다.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, 제8조,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중 “다만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”를 삭제한다.

별지 1,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 ①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지의 사용 2. 공작물의 설치 3. 물품판매 및 삼행위 4. 기타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p>②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 ① <삭제></p> <p>② <삭제></p> <p>④ <삭제></p>
<p>제8조(권리양도의 제한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8조(권리양도의 제한) <삭제></p>
<p>제12조(입장거절 및 퇴장)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염병 질환자 2.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.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.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.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	<p>제12조(입장거절 및 퇴장) <삭제></p>
<p>제13조(수수료의 환불)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2조의 규정에</p>	<p>제13조(수수료의 환불) <삭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별지 1, 2</p>	<p><삭제></p>